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50253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조태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현

담당변호사 신인수

채권자 보조참가인

채 무 자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대표이사 김영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철, 전세영, 양주형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 가. 채무자의 2025. 11. 4. 자 이사회결의 중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 신설,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 개시 및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 결정에 관한 부분,
 - 나. 채무자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2025. 11. 21. 자, 2025. 12. 2. 자, 2025. 12. 9. 자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결의에 관한 부분,¹⁾
 - 다. 채무자의 2025. 12. 16. 자 이사회결의 중 대표이사후보 확정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주이자 채무자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였던 사람이고, 채권자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주주이다.

나. 채무자는 2025. 11. 4.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차기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 기준 안건과 부문장급 경영임원, 법무실장

1) 신청취지를 위와 같이 선회한다.



에 대한 임명 및 면직, 주요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사전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이사회 규정 제8조 제3항 신설 안전등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채무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이사회에 총 10명(김성철, 김용현, 최양희, 곽우영, 윤종수, 안영균, 이승훈, 조승아, 김영섭, 서창석)의 재적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 기준 안전'에 대하여는 이사회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8명의 이사가 찬성하여 가결되고, '이사회 규정 제8조 제3항 신설 안전'에 대하여는 6명(김용현, 최양희, 곽우영, 윤종수, 이승훈, 조승아)의 이사가 찬성하고, 4명(김성철, 김영섭, 안영균, 서창석)의 이사가 반대하여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채무자 이사회에 설치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5. 11. 5.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후 채무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모집 마감일인 2025. 11. 16.까지 접수된 총 33명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① 2025. 11. 21. 차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② 2025. 12. 2. 차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③ 2025. 12. 9. 차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각 개최하여 3차에 걸친 대표이사 후보 심사를 하였고, 대표이사 후보 심층면접 대상자 3명(박윤영, 주형철, 홍형표)을 선정 의결(이하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채무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5. 12. 16. 위 3명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박윤영을 최종후보로 선정한 후 채무자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채무자 이사회는 같은 날 재적이사 총 10명 중 8명(김용현, 최양희, 곽우영, 윤종수, 안영균, 이승훈, 김성철, 서창석)의 출석 및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박윤영을 차기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하는 의결(이하 '2025. 12. 16. 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조승아가 채무자 사외이사로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조승아는 2023. 6. 30. 채무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 3. 26.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회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으로, 채무자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24. 3. 20. 채무자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보유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감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4.75%),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었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위원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당시 채무자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바. 채무자는 2025. 12. 17. 조승아에 대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2024. 3. 26.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사외이사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 공시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채무자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정관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2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 이하로 한다.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각호 생략)

제33조(대표이사후보의 선정)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의 선정을 위하여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정한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군을 발굴·구성하고 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1인을 선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최종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제35조(경영임원)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둔다.

④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제42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육성
2.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 채무자 이사회 규정

제9조 의사 및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사내이사는 제8조 제1항 제30호, 제31호, 제33호, 제34호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대표이사는 동항 제29호 및 제29호의2(각 현직 대표이사가 대표이사후보인 경우에 한함)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동항 제29호 및 제29호의2(각 사내이사가 대표이사후보인 경우에 한함), 제32호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채권자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2024. 3. 26. 채무자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조승아는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채무자 사외이사로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총 10명으로 구성된 채무자 이사회에서 조승아는 유일한 여성 이사였는데, 조승아가 2024. 3. 26.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 퇴임함에 따라 채무자 이사회는 전부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는바, 위와 같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 이사회 구성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20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 중 이사회 규정 제8조 제3항 신설 안건의 경우 채무자 정관 제35조 4항에 위반하여 대표이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25. 12. 16. 자 이사회 결의에는 위법·무효의 하자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정지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2026. 1. 23.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 제1항의 나.항을 추가하여, 기존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2025. 12. 16. 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였던 것과 함께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신청취지의 변경은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것으로서 신청기초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하면서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역시, 채권자가 기존에 다투고 있는 채무자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의 효력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방법만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5마972 결정, 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승아가 이 사건 이사회 및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당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이는 채무자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채무자 주식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나 채무자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조승아로 하여금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이 사건 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서 조승아가 행사한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위 각 결의는 이 사건 이사회 규정에 따른 결의정족수인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③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제도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규정이나 행정적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위반하여 구성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 신설 안건의 경우 채무자 정관 제35조 제4항과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안건 결의의 유효성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보다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안건 결의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하여야 할 채권자 측의 급박한 손해나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와 참가인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 전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각 이사회추천위원회 결의 및 이에 기초한 2025. 12. 16. 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27.

재판장	판사	김 세 현	<u>전자서명완료</u>
	판사	박 광 일	<u>전자서명완료</u>
	판사	권 민 재	<u>전자서명완료</u>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6.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주사 변영숙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